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란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전승교육사,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0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산학겸임교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전승교육사, <u>명장 등</u>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전승교육사, <u>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등</u>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u>5.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u> <u>6.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u>